



형벌 사항

☑ 기체신고

- 처벌기준**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
- 관련규정** 항공안전법 제122조, 제161조
- 위반사항**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
 - 사업용(무게 기준 없음) 및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 대상
- 확인사항**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(교통안전공단 발급)

☑ 비행승인

- 처벌기준** 500만 원 이하 벌금
- 관련규정** 항공안전법 제127조, 제161조
- 위반사항** 관제권,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
- 확인사항** 비행승인허가 공문(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)

☑ 사용사업 미등록

- 처벌기준**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- 관련규정** 항공사업법 제48조, 제78조
- 위반사항**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경우
- 확인사항**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(지방항공청 발급)

☑ 미신고 기체의 영리목적 사용

- 처벌기준**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
- 관련규정** 항공사업법 제71조, 제80조
- 위반사항** 신고대상 기체를 신고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- 확인사항**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(교통안전공단 발급)
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(지방항공청 발급)



과태료 사항

☑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

- 처벌기준** 300만 원 이하 과태료
- 관련규정** 항공안전법 제129조, 제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
- 위반사항**
 - 인구 밀집지역에서 인명·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
 - 관제권(공항주변 반경 9.3km), 비행금지구역(원전주변 등)에서 비행하는 경우
 - ※ 스마트폰 (dorne.onestop.go.kr)에서 해당지역 확인
 - 야간비행(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) ■ 음주·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
- 확인사항** (야간비행) 특별비행승인허가 공문(지방항공청 발급)
(비행승인) 비행승인허가 공문(지방항공청 또는 군 관제기관 발급)

☑ 안전성인증 검사

- 처벌기준** 500만 원 이하 과태료
- 관련규정** 항공안전법 제124조, 제166조
- 위반사항** 최대 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가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(영리, 비영리 무관)
 - ※ 시험비행 등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
- 확인사항** 안전성인증서 확인(항공안전기술원 발급)

☑ 조종자증명

- 처벌기준** 400만 원 이하 과태료
- 관련규정** 항공안전법 제125조, 제166조
- 위반사항**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를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
- 확인사항**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확인(교통안전공단 발급)

☑ 보험

- 처벌기준** 500만 원 이하 과태료
- 관련규정** 항공사업법 제70조, 제84조
- 위반사항** 제3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- 확인사항** 보험증권,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(지방항공청 발급)

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



1 드론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시 처벌기준

안전관리 제도 및 처벌기준

구분	안전관리제도				위반 시 처벌기준
	최대이륙중량 2kg 초과		최대이륙중량 2kg 이하		
	사업	비사업	사업	비사업	
장치신고	○	○	○	×	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
조종자 준수사항	○	○	○	○	300만 원 이하 과태료
보험가입	○	×	○	×	500만 원 이하 과태료
조종자 증명	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		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		400만 원 이하 과태료
	○	○	×	×	
안전성 인증검사	이륙중량 25kg 초과		이륙중량 25kg 이하		500만 원 이하 과태료
	사업	비사업	사업	비사업	
비행승인*	○	○	△	△	2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
	※ 관제권, 비행금지구역,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				



* 비행승인

- 관제권 · 비행금지구역 또는 고도 150m 이상 미승인 비행 ⇒ 300만 원 이하 과태료
- (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) 미승인 비행 ⇒ 500만 원 이하 벌금

청렴은 건강한 공직사회를 지키는 훌륭한 백신입니다.

부산지방항공청 공직자는 청탁·향응·금품을 받지 않습니다.

위반행위 신고 : www.molit.go.kr(국토교통부 e-클린센터)



2 드론 비행공역 현황



- 모든 드론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
-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경우, 비행승인이 필요한 일반구역
-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(UA)으로 구분

비행구역	비행승인 대상	지역		
		구분	필요지역	관할기관
①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	모든 드론	비행금지구역	휴전선 일대	합참
			서울 강북 원전 반경19km (5개소)	수방사
② 일반구역	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	관제권	비행장 중심 반경 9.3km(31개소)	합참(A구역 : 반경 3.7km) 지방항공청(B구역: A구역 바깥) 관할 군부대(군 : 22개소) 관할 지방항공청(민 : 9개소)
			비행금지구역 · 관제권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(UA)을 제외한 모든 지역	
③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(UA)	비행승인 불필요		전국 32개소(항공정보간행물 등재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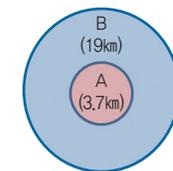
※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 시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



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현황



비행금지구역(원전주변, 5개소)



관제권



비행금지구역(P73, 서울강북)

